

항공기 승무원에서 발생한 급성골수성백혈병

성별 남성

(나이) 61세

직종 항공기 승무원

직업관련성 낮음

1. 개요

근로자 ○○○는 1985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33년간 □사업장 승무원으로 근 무하던 중 2017년 4월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. 근로자는 장기간 비행업무 로 인한 방사선 및 소독용 약제 노출과 불규칙한 야간 교대근무, 열악한 기내환경 등 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2019년 6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을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였고,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9년 7월 산업안전보건연구 원에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.

2. 작업화경

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총 19,377시간 비행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. 상병 과 관련된 유해인자로는 우주방사선과 보안검색대 통과 시 전리방사선, 기내 소독제 사용에 따른 화학물질로 판단하였다. 우주방사선 예측 프로그램인 CARI-6M을 활용 하여 근로자의 비행(약 33년) 중 총 누적 피폭량을 산출한 결과 98.93 mSv로 추정되 었다. 보안검색대 통과 시 노출 가능한 전리방사선은 자연방사선 피폭수준으로 평가 되었고. 기내 소독제 사용에서 질환과 관련되는 벤젠. 포름알데히드의 노출은 확인되 지 않았다.

3. 해부학적 분류

- 림프조혈기계암

4. 유해인자

- 물리적 요인

1. 암질환 가. 림프조혈기계암 08 09

5. 의학적 소견

근로자 ○○○은 2017년 4월 13일 건강검진을 통해 백혈구 감소 이상 증상을 발견하였으며, 2017년 10월 30일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골수 검사를 통해 골수 섬유증으로 진단받았다. 이후 2017년 11월 30일 타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동일한 골수 검사 슬라이드를 통해 만성 골수증식질환이라는 소견으로 추적 관찰 지속하였다. 2019년 2월 11일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이행하였고, 2019년 3월 항암치료 중 연쇄구균 감염(파생 상병)이 발생하여 치료하였다. 2019년 9월 19일 조혈모세포 이식 후 경과 관찰 중이다.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근로자는 대학교 2학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약20~25년 하루·한갑의 흡연력이 있으나,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. 2017년 10월 30일 초진 의무기록에는 약 37갑년의 흡연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.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상 고립성 폐결절, 이명, 위궤양, 근골격계 염좌 및 긴장, 구강 아프타, 만성 치주염, 결막염 등의 진료력이 있었다. 근로자는 1남 2년 중 첫째로, 어머니는 췌장암으로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, 의무기록 상 근로자의 아버지는 1999년 혈액암으로 사망하였다고 기록되었다.

6. 고찰 및 결론

근로자 ○○○(남, 1956년생)은 61세가 되던 2017년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았다. 근로자는 1985년 1월 21일부터 2018년 1월 28일까지 약 33년간 □사업장 승무원으로 근무하였다('17.10.31.~'18.1.28. 휴직). 국제 암연구소(IARC)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충분한 근거가 있는 직업성 발암인자로 정확하게 분류한 것은 벤젠이며, 그 밖에 포름알데히드, 1,3부타디엔, 고무생산, 토륨232, 인32, 스트론튬90, 엑스선 및 감마선 등을 포괄적으로 백혈병을 일으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인자로 분류하였다. 승무원으로서 노출될 수 있는 여러 직업적 유해요인 중 국제암연구소(IARC)에서 상병 유발에 충분한 근거를 가진 요인으로 보고된 것은 전리방사선이다. 현재까지 확보 가능한 객관적 자료인 CARI-6M으로 산출·추정한 근로자의 총 누적 방사선량은 98.93 mSv이고, 이를 바탕으로 KOSHA-PEPC Ver. 2.0 프로그램 인과확률의 중앙값은 20.5218%로 산출되었다.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. 끝.